제1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화(2013.3.22)

#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토 보고서

총 무 위 원 회

# 목 차

1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-----

# 의안번호 제2013 - 12호

# □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 □ 검 토 보 고 서 □

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. 03. 06

나. 제 출 자 : 조기원, 강창남, 이애숙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3. 03. 11

## 2. 제안이유

○ 거창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거창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골자

## 가. 기본이념 (안 제3조)

○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,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 유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

## 나. 군수의 책무 (안 제4조)

○ 군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, 추진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

#### 다.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(안 제7조)

○ 군수는「여성발전 기본법」의 제7조에 따라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 립・시행하여야 함

## 라. 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(안 제8조)

-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,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-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

## 마. 성평등위원회의 구성 (안 제9조)

-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장은 부군수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

#### 바. 성평등 촉진 시책 (안 제16조~ 제36조)

-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(안 제16조)
-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적극적 인 시책을 마련 (안 제17조)
-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(안 제18조)

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(안 제7조)
- 여성발전 기본법 제14조, 같은법 시행령 제26조(안 제31조)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(안 제18조)
-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(안 제19조제3항)
- 성별영향분석 평가법 제5조(안 제37조)
-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, 제10조(안 제19조제5항)
- 지방재정법 제36조의2, 제53조의2(안 제38조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
- 라. 입법예고(2013. 3. 8~ 2013. 3. 14)결과 : 특기사항 없음.
- 마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가. 조례가 공포되면 군은 어느 한쪽성의 참여가 부 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 를 취해야 하고,
- 나. 군에서 위탁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해야 하며, 성평등 정책의 수립·시행과 관련해 자문함으로써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완화시킬뿐만 아니라,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,

- 다. 제정 내용은 상위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,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었음.
- 라. 또한 저출산 고령화 등이 가속화 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여성 정책의 변화 반영 및 성평등 정책 추진의 기본적 사항들을 정하고 성별 영향 분석 평가법 제정에 따라 추진 근거를 규정하여 성평등 관점이 군정 전반의 사업 및 정책에 반영 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적합한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<참고자료>

#### ■ 관계법령발췌

## 여성발전기본법

[시행 2011.12.8] [법률 제10789호, 2011.6.7, 타법개정]

- 제7조(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18>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여성정책의 기본방향
  - 2.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가. 남녀평등의 촉진

- 나.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
- 다. 여성의 복지 증진
- 라.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
- 3.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

#### [전문개정 2008.6.13]

제14조(여성주간)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(女性週間)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8.6.13]

#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

[시행 2012.5.23] [대통령령 제23807호, 2012.5.23, 타법개정]

- 제26조(여성주간 행사)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 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.
  - ②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단체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.
  - 1. 기념행사
  - 2. 연구발표행사
  - 3.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
  - 4.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
  - 5.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

# 지방공무원 임용령

[시행 2012.5.24] [대통령령 제23093호, 2011.8.22, 일부개정]

- 제51조의2(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) 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·제3항·제4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, 채용목표비율, 합격자결정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9.2.6]

#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

[시행 2010.7.5] [법률 제10339호, 2010.6.4, 타법개정]

- 제3조 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 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,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2.4>
  - 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# 성별영향분석평가법

[시행 2012.3.16] [법률 제11046호, 2011.9.15, 제정]

제5조(분석평가 대상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정·개정을 추진하는 법령(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 및 조례·규칙을 말한다)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(이하 "대상 정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

[시행 2009.12.30] [법률 제9892호, 2009.12.30, 일부개정]

- 제9조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(이하 이 조에서 "여성기업제품"이라 한다)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  - ② 공공기관의 장이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.
  -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  -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

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.

#### [전문개정 2009.12.30]

제10조(자금지원 우대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.

# 지방재정법

[시행 2012.3.9] [법률 제10991호, 2011.8.4, 일부개정]

- 제36조의2(성인지 예산서의 작성·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[이하 "성인지 예산서"(性認知 豫算書)라 한다]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  -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## [본조신설 2011.3.8]

- 제53조의2(성인지 결산서의 작성·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성인지 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  -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## [본조신설 2011.3.8]

# 통계법

#### [시행 2010.7.1] [법률 제10196호, 2010.3.31, 일부개정]

-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, 종류, 목적, 조사대상, 조사방법,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1.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·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2.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3.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
  - ③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,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